

# 부 산 가 정 법 원

## 제 1 부

### 판 결

사 건 2014드합○○ 위자료 및 재산분할등

원 고 김AA

피 고 문BB

변 론 종 결 2014. 7. 3.

판 결 선 고 2014. 7. 24.

###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재산분할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재산분할로 20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 이 유

###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75. 9. 6. 주CC와 혼인신고를 하고 부동산건축업 등을 하면서 상당한 재산을 모은 상태에서, 1995년경 피고를 소개받아 내연의 관계를 맺게 되었다.

나. 원고는 1999. 2. 초순경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였고, 그 결과 2000. 6. 22.경 원고 소유였던 창원시 ○○○구 DD동 ○○-○ 소재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에서 경매절차가 진행되는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과정에서 2000. 8. 31. 전처와 협의이혼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피고와 동거하다가 2009~2010년경 피고와의 동거를 청산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2008년경 설립된 ㉹㉹㉹요양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 ㉹㉹㉹의료재단(이하 '이 사건 재단'이라 한다)의 이사장으로 재직하였는데, 원고는 피고와의 동거를 청산 후에도 반복하여 피고의 주소지와 위 병원에 찾아와 소란을 피웠다.

마. 이에 이 사건 재단은 2010년경 원고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2010카합○○호로 출입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0. 4. 13. '원고는 위 병원 등에 출입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 사건 재단의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출입금지가처분결정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제소명령신청을 함에 따라 위 법원은 2010. 5. 25. 제소명령을 하였는데, 이 사건 재단이 기한 내에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위 법원은 원고의 신청에 따라 2010. 12. 30. 위 가처분결정을 취소하였다.

바. 이 사건 재단은 2010. 12. 22. 다시 원고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2010카합○○호로 출입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1. 1. 28. 위 가처분결정과 마찬가지로 취지의 출입금지가처분결정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이의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1. 4. 6. 그 가처분결정을 인가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원고가 부산고등법원(창원) 2011라○○호로 항고하였는데 위 법원은 같은 해 9. 29. 원고의 항고를 기각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사. 또한 피고는 2010. 1.경 원고를 상해, 재물손괴 등으로 고소하였고, 관련 사건에서 창원지방법원은 2010. 5. 28. 2010저○호로 '원고에게 2010. 7. 28.까지 피고의 주거 및 직장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를 명한다. 2010. 7. 28.까지 피고의 핸드폰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을 명한다.'는 내용의 임시조치결정을 하였다. 한편 원고 역시 2010. 5.경 피고를 횡령으로 고소하였다.

아. 원고는 2010. 11.경부터 자신이 이 사건 재단과 피고 등에게 그 소유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 건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부산지방법원 2010가합○○○호 약정보수금, 위 법원 2012가합○○○호 손해배상(기), 위 법원 2013가합○○○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등], 현재 그 일부는 항소심 계속 중이다.

자. 원고는 2013. 12. 24.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피고를 상대로 사실혼관계 파기를 원인으로 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금의 지급을 구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6호증, 제8호증, 제15호증의 1, 2, 제18~28호증, 을 제1, 3, 5호증, 제8~2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2.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부정행위를 저질렀고, 원고의 노력으로 이 사건 재단의 이사장이 되었음에도 이후 악의적으로 원고를 축출한 결과 원·피고 사이의 사실혼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3,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 나. 판단

#### 1) 사실혼관계의 존부

원고가 피고와 사실혼관계에 있었음을 전제로 제기한 이 사건 소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단순한 내연관계를 맺었을 뿐이고 사실혼관계에 이른 바가 없다고 다투나, 갑 제18, 19, 20, 2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가 2000. 8.경부터 그 관계를 청산하기까지 동거를 함으로써 사실혼관계에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 2) 사실혼관계 파탄에 관한 귀책사유

사실혼관계 파탄에 관한 원고의 위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의 부정행위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복수의 민사소송을 하였다는 정황 등만으로 피고가 원고를 악의적으로 축출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며, 달리 피고의 귀책사유로 사실혼관계가 부당파기 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다.

#### 3) 예비적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나아가 피고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다투면서 설령 원고의 사실혼 파탄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였다는

예비적 항변을 하므로 살피건대, 사실혼관계 부당파기로 인한 위자료청구권은 일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과 마찬가지로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 즉 늦어도 사실혼관계가 해소되었고 이를 인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시효로 소멸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소는 위 2009. 6.경 또는 2010. 5.경으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인 2013. 12. 24. 제기되었음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으므로, 이 점에 있어서도 원고의 이 사건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다.

### 3. 이 사건 소 중 재산분할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2013. 11. 사실혼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선언하면서 피고와의 사실혼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사실혼관계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로 20억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으로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을 경우에 한하는 것인바, 부부재산의 청산의 의미를 갖는 재산분할에 관한 규정은 부부의 생활공동체라는 실질에 비추어 인정되는 것으로 사실혼관계에도 준용 또는 유추적용할 수 있고, 따라서 사실혼관계의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은 사실혼관계가 해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소멸한다(민법 제839조의2 제3항).

나아가 사실상 혼인관계는 사실상의 관계를 기초로 하여 존재하는 것이므로 당사자 일방의 의사에 의하여 해소될 수 있고 당사자 일방의 파기로 인하여 공동생활이 없게 되면 사실상의 혼인관계는 해소되는 것이다(대법원 1977. 3. 22. 선고 75므2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앞서 인정한 사실과 갑 제26~28호증, 을 제16호증의 기재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와 피고는 2010. 1.부터 2010. 5.경까지 서로에 대하여 형사고소를 하였고, 원고는 2010년경부터 피고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을 반복하였던 점, ② 피고가 이사장으로 재직 중인 이 사건 재단은 2010년경 원고를 상대로 출입금지가처분을 구하였고, 이에 관한 창원지방법원 2010카합○○호 출입금지가처분 사건에 관한 2010. 4. 13.자 결정문에는 당시 원고와 피고의 동거가 청산된 상태라는 사실인정이 포함되어 있는바, 위 가처분 심리 과정에서 피고 또는 원고는 그 사이의 동거가 청산되었다고 주장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는 늦어도 위 결정문을 송달받았을 무렵 위 관계가 청산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피고의 의사를 인식하였을 것인 점, ③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다른 민사사건 등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되는바(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8다92312, 92329 판결 등 참조), 피고와 원고 사이의 창원지방법원 2011가합○○○ 손해배상(기) 판결[이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부산고등법원은 2013. 7. 26.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하 '관련 확정판결'이라 한다]에서 원고와 피고가 2000년경부터 동거하다가 2009. 6.경 내연관계를 청산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된 점, ④ 피고는 부산고등법원 2011나○○○ 약정보수금 사건의 항소이유서에서 피고와 2010. 5. 16.까지 동거하였음을 밝힌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2009. 6.경 또는 늦어도 2010. 5.경에는 원고와 피고의 사실혼관계가 파탄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갑 제2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2013. 11. 피고로부터 사실혼관계가 파기되었음을 직접 통지받기까지 사실혼관계가 계속되었다거나, 관련 확정판결 이전에는 피고와의

관계가 회복될 여지가 있었으므로 사실혼관계가 파탄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원고와 피고의 사실혼관계가 종료된 2009. 6.경 또는 늦어도 2010. 5.경으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인 2013. 12. 24. 제기되었으므로, 제척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기된 이 사건 소 중 재산분할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재산분할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문희

                 판사      백소영

                 판사      조수진